

## 강 령

【 2024년 2월 23일 제정 】

국민의미래는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수호하며, 평화와 풍요 속에서 미래세대가 희망의 꿈을 꾸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지속 가능한 번영의 나라를 만든다.

국민의미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선진 대한민국의 영속을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차별 없는 공정한 경쟁의 법칙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진력한다.

또한, 경쟁사회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계층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격차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구상한다.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프론티어 산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정치혁신을 통해 여의도 정치의 특권을 내려놓고 동료 시민이 희구하는 정치와 정당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

국민의미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희망의 나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희망을 품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국가의 밝은 미래를 동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나라를 실현한다.

2024. 02

# 국민의미래

당헌

# 당 헌

【 2024년 2월 23일 제정 】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의미래라 한다.

제 2 조 (구성) ① 국민의미래는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이하“시·도”라 한다)에 둔다.

## 제 2 장 당 원

제 3 조 (요건) ①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입당원서를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제출하여 입당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③ 책임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는 책임당원이 아닌 당원에게 책임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4 조 (당원의 권리·의무·소멸)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는 책임당원에 한한다.

- 선거권
- 피선거권
-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 당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5.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6.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윤리교육 포함)을 받을 의무
  7.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 ③ 제2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 ④ 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입당이 확정되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탈당 신고서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로부터 소멸한다.

**제 5 조 (제명·탈당자의 재입당)** ①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탈당권유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자격심사)** ①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7일 이내에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된 것으로 본다.

② 사무총장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최고위원회의의 보고를 거쳐 추천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는 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당원명부에 즉시 등재하여야 한다.

**제 6 조의 2 (당원소환제)** ①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를 한 주요당직자를 대상으로 전당원투표 등을 통해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심사기준)** 당원자격심사는 당헌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요건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한다.

1.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2.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3.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4.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5.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제 8 조 (이의신청)** ① 시·도당이 입당신청인의 입당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지나도 입당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당신청인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중앙당에 입당원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당원서 접수가 거부된 날, 입당불허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입당원서 접수 후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적부를 심사·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도당 및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 의결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제 9 조(입당확정)** 시·도당 사무처장은 입당이 확정된 당원의 경우 입당원서에 입당확정 년·월·일을 명기하고 이를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 10 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원명부에 기재하게 한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은 탈당신고서를 제출한 당원에게 탈당증명서를 교부한다.

**제 11 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 제1부총장, 제2부총장, 당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 2명 등 5인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중앙당 조직국장을 간사로 한다.

③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4인 등 5인으로 구성하고, 시·도당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시·도당 사무처장을 간사로 한다.

**제 12 조(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비 납부를 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가 제한 될 수 있다.

③ 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3 조(상벌)**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 등에 대하여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징계 할 수 있다. 단, 당원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 3 장 당 기구

### 제 1 절 전당대회

**제 14 조 (구성)** ①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전당대회를 둔다.

② 전당대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포함)
3. 상임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중앙당 주요당직자(사무총장, 제1부총장, 제2부총장, 상설위원장)
6.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7. 당 소속 광역단체장
8. 당 소속 기초단체장
9. 당 소속 광역의원
10. 당 소속 기초의원
11. 전직 국회의원, 전직 시·도지사로서 당원인 자
1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13. 정책연구원장, 부원장, 연구위원
14.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15. 시·도당 대회에서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전당대회가 2년 이내에 실시 될 경우는 정기 전당대회 개최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전당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5 조 (기능과 권한)** ①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강령의 채택과 개정
2. 당헌의 제정과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4. 대통령후보자·당 대표·최고위원의 지명
5. 기타 주요 안건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기능은 최고위원회의가 대행 할 수 있다.

**제 16 조 (소집)** ①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④ 전당대회의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7 조 (임원)** ① 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 대의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은 선출된 의장이 대의원

중에 지명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8 조 (의결)** ① 전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 제 2 절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제 19 조(지위와 권한)** ①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 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최고위원 2명 지명
3. 정책위원회 의장 임면
4.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5. 당무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6.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제 20 조(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① 당 대표와 최고위원 3명은 통합선거로 선출한다.

②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대의원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의 반영비율은 당규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표의 최종집계 결과 최다득표자가 당 대표가 되고 2위부터 4위까지의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다만, 4위 득표자 이내에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④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한다.

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1 조(임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2 조(당 대표의 결위)** ① 당 대표가 결위된 때에는 원내대표, 제20조 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으로 당 대표직을 승계한다.

② 승계한 당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23 조(권한대행)**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제20조 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4 조(선출직 최고위원의 결위)** 제20조 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전

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3 절 최고위원회의

**제 25 조(지위와 구성)** ① 최고위원회의는 당무전반에 관한 최고심의·의결기관이다.

②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원내대표
3.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 3명
4. 정책위원회 의장
5.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
6. 사무총장

③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 대표로 한다.

**제 26 조(기능과 권한)** ①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2. 전당대회와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3. 당규의 제정과 개정
4. 주요당직자, 상설위원회 위원 등 임명에 대한 협의
5. 공천관리위원장 및 위원 임명에 대한 의결
6. 공직선거후보자, 시·도당위원장,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승인에 관한 의결
7.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8.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
9. 기타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의결

**제 27 조(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최고위원회의는 주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 제 4 절 당무집행기구

**제 28 조(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시·도당에 시·도당사무처를 둔다.

**제 29 조(당무집행기구)** ① 중앙사무처에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제1부총장, 제2부총장을 두고, 당 대표 직속으로 대변인을 둔다.

② 사무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부총장, 제2부총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사무처에 기획조정국, 총무국, 조직국, 홍보국 외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 ④ 사무총장, 제1부총장, 제2부총장, 대변인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 ⑤ 사무총장, 제1부총장, 제2부총장의 임기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0 조(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 ① 당무집행기구, 원내대책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산하 사무처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사무처당직자는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당 대표가 임명한다.
- ③ 사무처당직자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및 사무처당직자 임면절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 5 절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 31 조(중앙당 상설위원회)** ① 중앙당에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청년위원회
2. 여성위원회
3. 인재영입위원회
4. 재정위원회
5. 국가안보위원회
6. 인권위원회
7. 법률자문위원회
8. 윤리위원회

② 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윤리규칙 등의 심의 및 제·개정
2.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심의·의결
3.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의결
4.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의 심의·의결
5. 기타 윤리위원회의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④ 당무 운영상 필요한 경우 당 대표는 제1항의 상설위원회 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각 상설위원회의의 구성, 기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2 조(특별위원회)** 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당 대표는 청년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인재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당내 여성발전기금을 구성·운영한다.

③ 당 대표는 청년·여성 등의 신진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내 정치교육과정을 둔다.

## 제 6 절 정치연수원

- 제 33 조(정치연수원)** ①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과 시민정치교육을 위하여 정치연수원을 둔다.  
② 정치연수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약간인을 두며,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③ 정치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 7 절 정책연구원

- 제 34 조(정책연구원)** ①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 4 장 시·도당

#### 제 8 절 시·도당대회

- 제 35 조(시·도당대회의 구성)** ①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대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관할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7.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8.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9. 당원협의회에서 선임한 당원
- ② 시·도당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 36 조(기능과 권한)** ① 시·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출
  2. 시·도당 위원장 선출
  3. 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4.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5.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처리
  6.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 ② 시·도당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 9 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 37 조(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당대회와 수임기관으로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7.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8.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9.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8 조(기능과 권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의 주요 당무와 정책의 심의·처리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처리
3. 시·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시·도당 윤리위원회 및 위원의 임명에 대한 의결
5. 중앙당이 위임한 사항
6. 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7. 기타 시·도당의 당무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10 절 시·도당위원장과 집행기구**

**제 39 조(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할한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시·도당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0 조(사무처 등)** ① 시·도당에 사무처를 둔다.

② 시·도당에 상설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당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1 절 당원협의회**

**제 41 조(당원협의회)** ① 시·도당 아래 국회의원선거구별로 지역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

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당원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협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을 둔다.

③ 당원협회의 운영·구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 5 장 원내기구

### 제 12 절 의원총회

**제 42 조(지위와 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 43 조(기능과 권한)** ①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국회대책 및 원내전략의 결정
2. 국회제출 법안 등 의안 중 주요쟁점사안의 심의·의결
3.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
4. 원내대표의 선출
5.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6.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7.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8.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
9.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국회의장, 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4 조(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제 45 조(의원총회 소집)** ① 의원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의원총회 개의 24시간 전까지 소속 의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6 조(회의)** ①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당 대표 등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 47 조(의결)**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이 비밀 투표를 요구할 경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③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 48 조(당론)** ①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 소속 의원은 국회 표결 시 당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당론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경우 이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명, 윤리, 종교 등에 관한 사항은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 13 절 원내대표**

**제 49 조(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제 50 조(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1 조(권한)** ① 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정책위원회 부의장, 위원의 임명
5.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 ② 제1항 제2호의 권한행사 시에는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배정한다.
- ③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원내대표가 결위된 경우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52 조(원내부대표 등)** ①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제 53 조(원내대책위원회)** ① 국회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

대책위원회를 둔다.

- ② 원내대책위원회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 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구성한다.
- ③ 원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 ④ 원내대책위원회의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 14 절 정책위원회

**제 54 조(지위와 구성)** ①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의원총회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5 조(기능과 권한)**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 3. 법률안, 예산안 등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정책협의 또는 검토업무
- 4.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제 56 조(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는 의장과 정책조정을 위한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둔다.

-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정책위원회의 주재
  -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 3. 당·정협의 업무총괄·조정
  - 4.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며, 부의장, 부위원장, 위원은 당 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 ④ 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6 장 공직후보자의 선출

### 제 15 절 공직후보자 추천 기구

**제 57 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하고,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⑤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
  - 2.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 ⑥ 후보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한다.
- ⑦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⑧ 그 밖의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및 이의신청 등 후보자 추천과 관련 세부 내용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① 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다만, 불법선거 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 59 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 대통령후보자는 경선으로 선출한다.

② 대통령후보자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20일까지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후보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④ 대통령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⑤ 경선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0 조(대통령후보자의 지위)** ①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후보자는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제 61 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 63 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시·도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제 64 조(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비례대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은 해당 시·도당이 수행하되, 최종 추천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제 17 절 선거대책기구

**제 65 조(선거기획단)** ①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6 조(선거대책기구)** ①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② 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 7 장 회계

**제 67 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68 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총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④ 기타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9 조(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 70 조(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회계내역은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은 후에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제 8 장 당헌개정

**제 71 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 72 조(의결절차)** ① 전당대회 의장은 당헌 개정안의 발의가 있으면 전당대회 개최일 전 5일까지 공고하고, 전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3 조(개정당헌의 공포)** 당헌 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 대표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 9 장 보칙

**제 74 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최고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 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 75 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 관련서류와 인장의 인계)**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 76 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 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⑤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 77 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2024. 02. 23 제1호>

제 1 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2월 23일 창당대회에서 채택 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초대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 구성원 등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초대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 구성원은 제 17조, 제20조,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창당대회에서 합의추대의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단, 일부 구성원만 합의 추대되더라도 최고위원회의 구성은 유효하다.

② 제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 이전에 선출(승계 포함)된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③ 당 대표 궐위시 최고위원 중 연장자가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시 2024년 5월 29일까지 공석으로 둔다.

제 3 조(전당대회 구성과 권한 등) 전당대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전당대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단 당헌의 제정·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특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5 조(기타 위임) 기타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을 작성·시행 할 수 있다.